

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하수도과)

제출일 : 2020. 11.

1. 제안이유

- 가. 하수도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 및 낮은 현실화율에 따라 경영 적자해소가 필요함
- 나.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단계적으로 50%까지 인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2021년 3월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6.44% 인상(안 별표1)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와 처리비용의 괴리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과 요금인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검토결과,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